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
----------	----

제출년월일 : 1999년 7월 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2차 구조조정과 관련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정원조정 : 552명 → 501명 (△5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42명 → 492명 (△50명)

○ 의회사무과의 정원 : 10명 → 9명 (△1명)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자치 12200-1063호('99.6.16)구조조정지침참조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평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 기본에 두는 정원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01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동조제1호중 "542명"을 "492명"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0명"을 "9명"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

[표 1]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536
1. 집행기관의 정원		527
2. 의회사무과의 정원		9

[표 2]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526
1. 집행기관의 정원		517
2. 의회사무과의 정원		9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 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6인(집행기관의 정원 15인, 의회사무과의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7월 31일(별정직의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0인(집행기관의 정원 1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의 경우는 2001년 1월 10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5인(집행기관의 정원 25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 기본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01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42명		1. _____ : 492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 10명		2. _____ : 9명		

# 강 원 도

우 200-700 / 춘천시 봉의동 15 / 전화 (0361) 249-2989 (행)2989 / 전송 249-4027  
 자치행정과장 과장 : 박 영 환 조직관리담당 : 최 순 규 담당자 : 이 주 익

문서번호 자치 12200 - 1063

시행일자 '99. 6. 16.

(경 유)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자치행정 · 총무과장

선 결	순수	홍승	지 시			
접 수	일자	1999. 6. 16.	결 재	부순수	가비리	
	시간			과장	신	
	번호	7332	공 람	성담	7/5/99	
처 리 과	자치행정과					
담 당 자	이주익					

## 제 목 2단계 지방구조조정지침 시달

1. 근거 : 기구정원규정 제23조,  
 행정자치부 자제12200-352('99.6.12)호

2. 정부의 행정개혁추진방침에 의해 '98. 1단계 지방구조조정에 이어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될 2단계 지방구조조정지침을 불임과 같이 시달하니 빠른 시일내에 시군별 계획을 확정하고, 일정대로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불 임 :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지침 1부. 끝.

# 강 원 도 지

전결 행정부지사 임 무 룡



수신처 : 더(01~18)

# 1. 2段階 地方公務員(市・郡) 定員 減縮目標 人員

단체별	현정원	감축목표원 인	표원 %	감축후 정원	비고
합계	12,110	1,181	9.8	10,929	
춘천	1,390	147	10.6	1,243	
원주	1,227	118	9.6	1,109	
강릉	1,228	123	10.0	1,105	
동해	592	57	9.6	535	
태백	596	64	10.7	532	
속초	560	56	10.0	504	
삼척	851	86	10.1	765	
홍천	665	67	10.1	598	
횡성	521	47	9.0	474	
영월	593	61	10.3	532	
평창	552	51	9.2	501	
정선	645	69	10.7	576	
철원	515	45	8.7	470	
화천	425	37	8.7	388	
양구	393	33	8.4	360	
인제	450	38	8.4	412	
고성	451	40	8.9	411	
양양	456	42	9.2	414	

※ 현정원 : 고용직중 지도원(방법원)제외

## 2. 2段階 行政機構(市・郡) 減縮目標

단체별	현 기구		감축목표		감축 후		비 고
	국	과	국	과	국	과	
합 계	16	235		10	16	225	
춘 천	4	22		2	4	20	
원 주	4	21		2	4	19	
강 룡	4	22		2	4	20	
동 해	2	17		1	2	16	
태 백		15		1		14	
속 초		15		1		14	
삼 척	2	17		1	2	16	
홍 천		11				11	
횡 성		10				10	
영 월		11				11	
<u>평 창</u>		<u>9</u>				<u>9</u>	
정 선		11				11	
철 원		11				11	
화 천		8				8	
양 구		8				8	
인 제		9				9	
고 성		9				9	
양 양		9				9	